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1012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김길수

변론 종결2021. 9. 30.

판결 선고2021. 10. 2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326,104,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6,104,7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산하 양천세무서장은 B에게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는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제기일 당시 B의 체납세액은 326,104,740원이다(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2015.1기	2015.07.27.	2019.08.31.	52,938,080	56,908,400
부가가치세	2015.2기	2016.01.25.	2019.08.31.	71,636,640	77,009,350
부가가치세	2016.1기	2016.07.25.	2019.08.31.	44,021,210	47,322,740
부가가치세	2016.2기	2017.01.25.	2019.08.31.	70,374,080	75,652,100
부가가치세	2017.1기	2017.07.25.	2019.08.31.	64,383,430	69,212,150
합계	303,353,440	326,104,740			

다. B는 2019. 6. 27.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6.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9. 11. 15.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12. 20.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호), 그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9. 6. 27. 이전에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과세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19. 8. 5. 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여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고지세액과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 10호증, 을 제1, 4,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B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F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제외하더라도(원고는 위 채무를 B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9. 6.경 B의 적극재산은 406,191,066원이고, 소극재산은 303,353,440원이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하여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	400,000,000	갑 제5호증
창원시 의창구 G	2,178,000원 = 공부면적 5,922㎡ × B의 지분 165 / 5922 × 2019. 6. 개별공시지가 13,200원	갑 제4호증
H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388,312원 = (계좌번호 1 생략) 380,633원 + (계좌번호 1 생략) 7,679원	갑 제7호증
I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3,624,754원	
합계	406,191,066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무	303,353,440	가산금 제외
합계	303,353,440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B의 건강상태 악화에 따른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과세고지가 이루어질 무렵 체결되었고(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9. 6. 28. 원고의 과세예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한바 있다), 달리 당시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임차인 F의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은 공제되어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억 6,000만 원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B는 F와 보증금 3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8.부터 2020. 2.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확정일자(2018. 2. 21.)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F는 위 임대차계약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중 2억 7,800만 원은 F가 2018. 2. 18. E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보증금도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거나 상계처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위 임대차계약은 2018. 2. 13. 체결되었는데, 같은 날 ② F의 아내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J과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B가 J으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③ J과 B의 딸 K 사이에 J이 K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L 1층 소재 M커피숍을 권리금 3억 4,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결국 큰 틀에서 보면 F 측은 B 측에게 임대보증금 3억 6,000만 원(①), 커피숍 권리금 3억 4,000만 원(③) 합계 7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B는 F 측에게 매매대금 4억 원(②)을 지급해야 해서, 그 차액이 3억 원 정도인데, 그 중 2억 7,800만 원은 위 대출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잔액도 여러 건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 등으로 지급되거나, 정산 또는 상계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본 것과 같이 3건 계약은 체결일이 동일하고, 잔금 지급일도 2018. 2. 28.로 동일하다). F도 자신이 작성한 답변서(을 제12호증)에서 '커피숍과 교환되면서 차액인 2억 7,8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함으로써 종료되었는데, F는 피고와 C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 11. 15. 5,000만 원을 반환받고(을 제4호증, 피고가 받은 매매계약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9. 12. 20. 3억 1,000만 원을 반환받아 임대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모두 반환받았다.

○ 원고는 위 임대보증금의 지급이나 반환에 관한 금융자료가 일부 미비한 것을 들어 임대보증금이 허위라거나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다른 증거 및 간접사실에 의해 그 지급 및 반환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추후 사해행위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임대보증금을 허위로 또는 증액하여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만일 그런 의도였다면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부터 자신 명의로 매수하지 않고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을 것이다), 달리 허위로 기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장 가까운 2019. 1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억 3,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9. 6. 27.)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3억 6,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억 3,000만원에서 위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7,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326,104,740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7,000만 원이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7,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효량

판사김해마루

판사김도완

별지

1) 2,178,000원 = 공부면적 5,922m² × B의 지분 165 / 5922 × 2019. 6. 개별공시지가 13,200원

2) 388,312원 = (계좌번호 1 생략) 380,633원 + (계좌번호 1 생략) 7,679원